

## 2025년 4월 29일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- 규정 개정사항

### ■ 회계감사규정 개정 신규조문 비교표

항목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2조 【위원회 구성】	1.회계감사위원회는 본 조합의 규약 제41조【선출】에 의거 선출된 7명으로 구성되며, 3명 이내의 후보위원을 둘 수 있다.	1.회계감사위원회는 본 조합의 규약 제41조【선출】에 의거 선출된 <b>5명 이내</b> 로 구성되며, <b>2명</b> 이내의 후보위원을 둘 수 있다.	

### ■ 회계규정 개정 신규조문 비교표

항목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47조 【계약방법】	<p>① 조합의 계약담당자는 사무국장 으로 한다.</p> <p>② 일반경쟁 입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예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1억원 이상인 재산 매입</p> <p>2. 예정대가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매각</p> <p>3. 위 "1"호 및 "2"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일 때</p> <p>③ 지명경쟁 입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예정대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재산 매입</p> <p>2. 예정대가 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재산의 매각</p> <p>3. "1"호 및 "1"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</p> <p>④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예정가격 5,000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제조</p>	<p>① 조합의 계약담당자는 사무국장 으로 한다.</p> <p>② 일반경쟁 입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예정가격 <b>5억원</b>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<b>5억원</b> 이상인 재산 매입</p> <p>2. 예정대가 <b>2억원</b> 이상인 재산의 매각</p> <p>3. 위 "1"호 및 "2"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일 때</p> <p>③ 지명경쟁 입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예정대가 1억원 이상 <b>5억원</b>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<b>1억원</b> 이상 <b>5억원</b> 미만의 재산 매입</p> <p>2. 예정대가 <b>1억원</b> 이상 <b>2억원</b> 미만의 재산의 매각</p> <p>3. "1"호 및 "1"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</p> <p>④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예정가격 <b>1억원</b> 미만의 공사 또는 제조</p>	

## 2025년 4월 29일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- 규정 개정사항

	<p>2. 예정대가 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재산의 매입 시 사전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.</p> <p>3. "1"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,000만원 미만의 재산매각</p> <p>⑤ 일반경쟁 입찰은 신문광고 또는 게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게시광고일 때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계약금액은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중의 납품총액을 포함한다.</p> <p>⑦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고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한다.</p> <p>⑧ 수의계약일 경우 예정가격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서(서식 제13호)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2. 예정대가 <b>1억원</b> 미만 재산의 매입 시 사전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.</p> <p>3. "1"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<b>1억원</b> 미만의 재산매각</p> <p><b>4. "1~3호"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 일 때</b></p> <p>⑤ 일반경쟁 입찰은 신문광고 또는 게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게시광고일 때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계약금액은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중의 납품총액을 포함한다.</p> <p>⑦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고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한다.</p> <p>⑧ 수의계약일 경우 예정가격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서(서식 제13호)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</p>	
--	---	--	--

항목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48조 【견적서】	제48조【견적서】 제47조(계약방법)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시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. 단,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.	제48조【견적서】 제47조(계약방법)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시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. 단, 계약금액이 <b>1,000만원</b>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.	